

## 2016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

# 2016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

2015. 12.



인사혁신처  
윤 리 과

### < 2015년 운영지침과 달라진 사항 >

- ▶ 독립생계소득기준 : 1인 가구 ('15년) 월925천원 → ('16년) 월974천원 등
- ▶ 농촌지역 소득기준 : ('15년) 도시지역 소득기준의 68% → ('16년) 67%
  - 도시와 농촌간 연소득 비율을 고려('14년 기준, 통계청)
- ▶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: 0.5ha미만 ('15년) 월175천원 → ('16년) 월213천원 등
- ▶ 고지거부 심사기준
  - 직계존속 :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/ 타인부양 등
  - 직계비속 :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하고, 등록기준일 이전 등록의무자와 1년 이상 별도세대 구성
- ※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독립생계 소득 기준 산정시 최저생계비(×150%)에서 '기준 중위소득(×60%)'으로 대체 함

### 1 독립생계 소득기준

-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(가족수 감안)로 함
  - 농촌의 경우 도·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, 동 기준의 67%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(2014년도 통계청 통계 기준1))
  -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'농축산물소득자료집' 참조
    - ※ 2014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: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(amis.rda.go.kr) > 소득조사분석 > 농축산물소득자료집조회 에서 내려받기
-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(현재 거주하는 주택 제외)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
  -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율(시중 CD금리 적용)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
    - ※ 시중 CD금리 기준일: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,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

1) 통계청 2014년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(연소득 52,019천원) 대비 농가소득(연소득 34,950천원) 비율

○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

✓ 총소득 = ①일반소득액 + ②재산의 소득환산액

① 일반소득 = 근로소득액 + 금융소득액 + 연금소득 + 임대소득 + 사업소득 등
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= 금융 및 부동산 자산(거주주택 제외) x 소득 환산율  
(기준일 CD 금리)

※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(중복금지)

○ 2016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도시지역	974	1,659	2,147	2,634	3,122	3,609	4,097
농촌지역	652	1,111	1,438	1,764	2,091	2,418	2,744

※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천원 미만은 절사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12,415원씩 증가(8인가구 : 7,641,095원)

※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× 60%

(8인가구 도시지역 : 4,584천원, 농촌지역 : 3,071천원)

○ 농지규모별 농업소득

(단위: 천원)

경지규모	0.5ha 미만	0.5-1.0ha 미만	1.0-1.5ha 미만	1.5-2.0ha 미만	2.0-3.0ha 미만	3.0-5.0ha 미만	5.0-7.0ha 미만	7.0-10.0ha 이상	10.0ha 이상
단위환산 ha→㎡	5천㎡ 미만	5천-1만㎡ 미만	1만-15만㎡ 미만	15만-20만㎡ 미만	2만-3만㎡ 미만	3만-5만㎡ 미만	5만-7만㎡ 미만	7만-10만㎡ 미만	10만㎡ 이상
농업소득	2,562	6,435	13,035	13,588	14,497	20,302	27,697	33,262	32,508
월 소득	213	536	1,086	1,132	1,208	1,691	2,308	2,771	2,709

※ 통계청 2014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

② 고지거부 심사기준

【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】

- 직계존속: 나이, 취업 등 직업유무, 보유재산의 정도, 취업·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
- 직계비속: 나이,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, 취업·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,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, 취업·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

⇒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

1. 부모

○ 부모의 경우,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

-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

※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

2. 자녀

○ 자녀의 경우,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

※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

3. 조부모 및 손자녀

○ 부모에 의하여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

-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

○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

#### 4. 타인 부양의 경우(직계존속만 해당)

-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,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
  -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(고지거부자 포함)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
    - ※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
-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,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전이 증명(통장입금 내역 등) 되면 허가 가능
  - ※ 타인(들)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
-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

#### 5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연락두절·행방불명된 직계 존·비속, 이(재)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
-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
-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
  - ※ 단,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

#### 6.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

-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,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

#### 7. 고지거부 신청기간

-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: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
-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: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
-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: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
- 승진·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: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
  - ※ 고지거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·통보(10일 이내 연장 가능)

#### 8.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

- 고지거부 신청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(생활현황, 소득현황 등)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
  - ※ (붙임)인정소득을 위한 증빙서류 참조

#### 9.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

- 연금소득(국민연금 제외)이 있는 직계존속, 이(재)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

<b>일반소득</b>	<p><b>&lt;농·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농지자경증명(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) 또는 농지원부, 출하증명, 가축사육증명 등</p> <p><b>&lt;사업소득이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</p> <p><b>&lt;근로소득이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소득확인서(재직기관)</p> <p><b>&lt;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연금수급증명서(금액 기재하여 발급)</p> <p><b>&lt;금융소득이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통장사본(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)                  -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 <p><b>&lt;임대소득이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임대차계약서 사본</p>
<b>재산소득</b>	<p><b>&lt;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   예) 등기부등본, 건축대장, 토지대장 등</p> <p><b>&lt;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&gt;</b>                  -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   예) 잔액증명서, 유가증권잔고증명, 통장사본, 주식거래증명서 등</p>
<b>기타</b>	연락두절·행방불명, 이(재)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

※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(<http://www.minwon.go.kr>)

- 전자민원(민원24):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농지원부 등

※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(<http://www.kreic.org/realtyprice>)

-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